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1555

제안일자 : 2020. 06. 17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공동주택 단지 내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비원 외에 미화원, 관리사무원을 포함하도록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○ 조문 각호 외의 본문 중 ‘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’를 ‘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’로 함(안 제6조의2).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2 각호 외의 본문 중 “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”를 “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‘경비원 등’이라 한다) 단지 내 노동자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의2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	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----------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----------.	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---------- 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'경비원 등'이라 한다) 단지 내 노동자의 ----------.
1.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	2. ---------- 비용 ----	2. (개정안과 같음)
3.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	3. (현행과 같음)	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	4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5.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	5. (개정안과 같음)
4.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”을 “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”으로 하고, 각호 외의 본문 중 “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”를 “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‘경비원 등’이라 한다) 단지 내 노동자의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호 중 “일부비용”을 “비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
5. 폭언·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	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----------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'경비원 등'이라 한다)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	2. ----------비용 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
<신 설>	5.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
4. (생 략)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